

2025. 7.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 도시 완주

상관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용)



모범사례

상관면 신리역공원 상설무대 설치

1 선정 이유

- 상관면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신리역공원에 상설 주무대 및 소무대를 설치함으로써 주민 관심도 및 만족도를 증대

2 기존현황 및 문제점 등

- 행사 주최 시 발생하는 예산부담에 따라 주민들이 향유 할 행사 및 프로그램이 축소화되고, 무대를 반복적으로 설치,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와 폐기물 문제가 발생함

3 개선된 점

- 무대 상시개방을 통해 공연뿐 아니라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민간행사를 활성화하고 행사가 없는 기간에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
- 관내 기관단체가 함께하는 행사들이 많아져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상호간의 문화·예술 활동을 공유

4 기대 효과

-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연 기회를 제공 및 지역 주민들의 상호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일련번호] 1

감사결과 처분요구

[제 목] 당직근무일지 작성 소홀

[부서·기관명] 상관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신분상 처분] “주의” ○○○○ ○○○, ○○○○ ○○○

[현 황]

○ 당직근무일지 미작성 현황

당직근무일	근무자		당직근무일지 작성여부	비 고
	직급	성명		
○○○○.○○.○○	○○○○	○○○	미작성	
○○○○.○○.○○	○○○○	○○○		

○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제3항에 따르면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완주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3항에 따르면 당직 책임자는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읍·면장에게 당직결과 상황보고(당직근무일지 작성)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감사담당관에서 2023.09.08. “공직기강확립 복무점검결과 알림”(당직근무일지 미작성) 공문을 시달하여 “당직근무관련 규정 교육실시” 및 “당직근무일지 작성”등 공직기강확립 철저를 요청하였다.

○ 그러나, 상관면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당직근무종료 후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위 현황과 같이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상관면에서는 당직근무(재택근무)후 근무일지 작성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2

감사결과 조치계획

[제 목]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부서·기관명] 상관면

[행정상 처분] 시정

[재정상 처분] 환수 000,000원

[신분상 처분] 없음

[현 황]

○ 월액여비 부적정 지급내역

(단위 : 일/원)

지급월	직급	성명	지급내역		적정지급액		과 다 지급액	비 고
			일수	금액	일수	금액		
00.0	0000	000	00	000,000	00	000,000	000,000	

[지 적 내 용]

○ 「완주군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의 규정에 따르면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 경우에 출장일 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상관면에서는 상기내역과 같이 출장내역이 없음에도 월액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상관면에서는 초과 지급한 월액여비를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3

감사결과 조치계획

[제 목]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부서·기관명] 상관면

[행정상 처분] 시정

[재정상 처분] 환수 000,000원

[신분상 처분] 없음

[현 황]

○ 재택당직자 부적정 지급내역 (환수 필요)

지급월	직급 성명	재택 근무일	초과근무 내역	초과근무 인정시간(분)		과다 인정시간 (분)	총 월 초과근무 수당시간		과다 지급 시간	환수 금액 (원)
				기산정	적정		기산정	적정		
합 계 액										000,000
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0	0000	0	00,000
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0	0000	0	0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0	0000	0	0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0	0000	0	0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0	0000	0	00,000
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0	0000	0	00,000
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0	0000	0	00,000
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0	0000	0	0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0	0000	0	00,000
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0	0000	0	0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0	0000	0	00,000

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0	0000	0	00,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0	0000	0	00,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0	0000	0	0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0	0000	0	00,000
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0	0000	0	00,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				

[지 적 내 용]

○ 「완주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당직의 구분)제3항에는 숙직(재택근무)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VI.초과근무수당 등 6.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다. 지급제외 대상자”에 따르면 당직명령에 따른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만 당직근무시간 외의 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 한편 「완주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당직비 지급)에 따르면 읍·면 재택근무자가 일과시가 종료 후 3시간 이상 산불비상동원, 재난상황 발생 등 기타업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 당직수당의 1/2을 지급할수 있으며, 읍·면 재택근무자에게 재택근무수당 2만원을 지급할수 있으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재택당직근무가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도 재택당직수당은 2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그러나, 상관면에서는 상기내역과 같이 초과근무시간 계산시 당직근무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상관면에서는 초과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환수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근무수당 지급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4

감사결과 조치계획

[제 목] 건설공사 제경비 계상 소홀

[부서·기관명] 상관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신분상 처분] 없음

[현 황]

- 공사 현황

연번	공사명	총공사금액 (천 원)	계약금액 (도급,천원)	공사기간	계약업체
1	○○○○○○○○○○	○○○○	○○○○	○○○○○○○○	○○○○
2	○○○○○○○○○○	○○○○	○○○○	○○○○○○○○	○○○○

[지 적 내 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르면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17조, 시행령 제9조 및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가입을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70일 이내인 경우 사업이 끝나는 날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상관면에서는 상기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지 아니하였고(상원신마을 공사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의 의무가입 대상인 공사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확인하지 않은(공덕마을 공사의 경우)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상관면에서는 건설공사 추진시 관련법령에 따른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제경비를 계상하여 주시고, 향후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5

감사결과 조치계획

[제 목]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소홀

[부서·기관명] 상관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신분상 처분] 없음

[현 황]

- 기간제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역기간	산재보험 가입여부
1	○○○○ ○○○○ ○○○○ ○○○○	○○○○ ○○○○	부
2	○○○○ ○○○○ ○○○○ ○○○○	○○○○ ○○○○	부
3	○○○○ ○○○○ ○○○○ ○○○○	○○○○ ○○○○	부
4	○○○○ ○○○○ ○○○○ ○○○○	○○○○ ○○○○	부
5	○○○○ ○○○○ ○○○○ ○○○○	○○○○ ○○○○	부
6	○○○○ ○○○○ ○○○○ ○○○○	○○○○ ○○○○	부
7	○○○○ ○○○○ ○○○○ ○○○○	○○○○ ○○○○	부
8	○○○○ ○○○○ ○○○○ ○○○○	○○○○ ○○○○	부
9	○○○○ ○○○○ ○○○○ ○○○○	○○○○ ○○○○	부
10	○○○○ ○○○○ ○○○○ ○○○○	○○○○ ○○○○	부
11	○○○○ ○○○○ ○○○○ ○○○○	○○○○ ○○○○	부
12	○○○○ ○○○○ ○○○○ ○○○○	○○○○ ○○○○	부
13	○○○○ ○○○○ ○○○○ ○○○○	○○○○ ○○○○	부

[지 적 내 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생계, 사업주의 피해분산, 국가의 노동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이는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하여야 하며,

○ 「완주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6조에 따르면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그러나 상관면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해야 함에도 13건의 사업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상관면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6

감사결과 조치계획

[제 목]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부서·기관명] 상관면

[행정상 처분] 시정

[재정상 처분] 환수 09,000원

[신분상 처분] 없음

[현 황]

○ 출장여비 지급 현황

연번	출장자	출장목적	출장일시	출장지	지급금액(원) 일비	비고 (환수금액)
				합계		09,000
1	000	000000000000000000	090900	00	09,000	09,000
2	00000	000000000000000000	090900	00	09,000	09,000

[지 적 내 용]

○ 「완주군 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근무지외 국내출장의 여비는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로 구성되고, 별표 1에 따른 여비지급구분표에 따라 1일당 일비 지급 기준은 25천원 식비는 25천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및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 지침」에 따르면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의료폐기물 소각장 현장 방문 계획”(자원순환과-7229, 2024.3.28.)호 및 “도시재생 선진지 관외출장 여비 지급”(상관면-5179, 2025.5.20.)호 에 의

하면 현장방문 추진을 위해 공용차량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

- 따라서, 상관면에서는 출장에 따른 일비는 12,500원을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상기내역과 같이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상관면에서는 과다 지급한 여비를 환수하여 주시고, 향후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